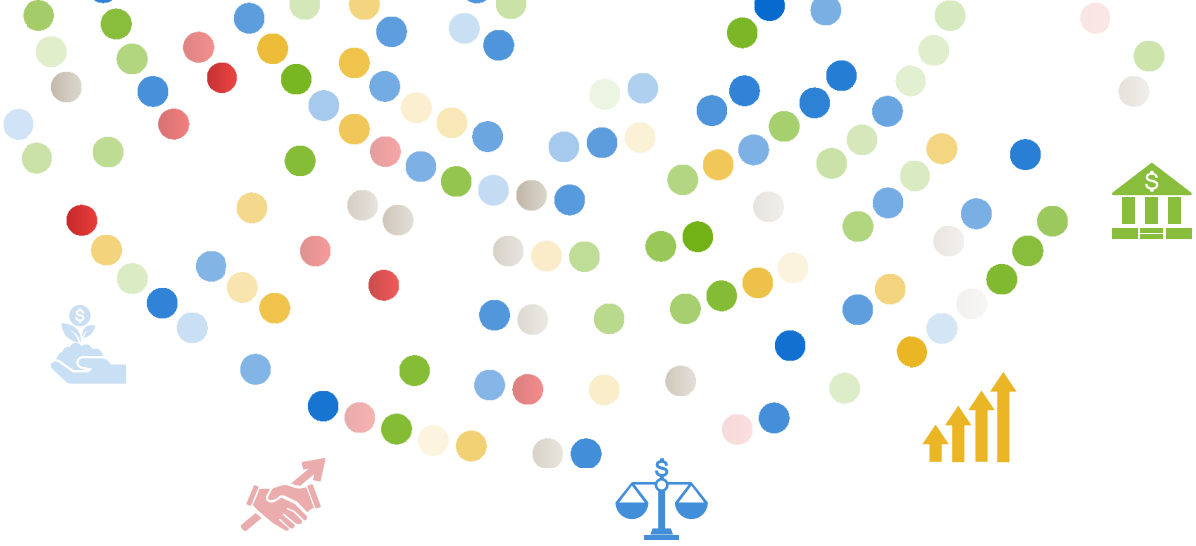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CONTENTS

01. 도입 배경 1

02. 주요 권고사항 2

03. 국내 입법동향 5

1.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및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5
2. 국가별보고서 6
3. 우리나라의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액션 13 관련 세법 개정 반영시) ... 7

04. 해외 입법동향 8

1. 북미 8
2. 유럽 9
3. 아시아/오세아니아 11
4.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MCAA 체결 현황 13
5. 요약 13

05. 요약 및 시사점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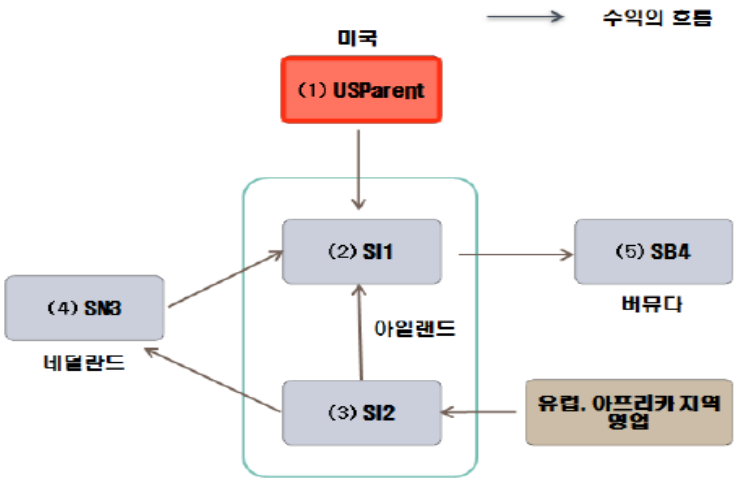
참고문헌 16

01 도입 배경

■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원 간의 내부거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BEPS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존과 같은 개별 국가 중심의 이전가격문서화 규정만으로 다국적기업이 설계한 복잡한 조세회피 scheme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사례 :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방식[1)]

글로벌 기업이 아일랜드에 두 개의 법인을 세워 여러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로열티,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집중시킨 후 해당 법인의 근거지를 조세회피처에 두어 세금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임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버뮤다 등 각 조세관할권별로 수행되는 사업과 이전되는 소득에 대한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여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보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 납세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문서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Action 13[2)]을 도입함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Ⅰ)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2015.11.19.

2) OEC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Action 13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02 주요 권고사항

■ **Action 13은 상기한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은 과제이며, 이전까지 전 세계 이전가격 과세의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OECD 이전가격지침[3] 제5장의 내용 전체를 대체하는 것임**

■ **이전가격문서화 강화를 위한 Action 13 권고사항의 핵심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임**

- 마스터파일은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의 조직구조, 주요 매출원, 주요 계약, 무형자산, 재무현황, 이전가격정책 등 그룹 전체의 사업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함
- 로컬파일은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특정 현지법인의 사업, 현지법인이 참여한 특수관계자 거래, 해당 거래 관련 이전가격 결정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원이 소재한 국가별로 소득배분, 법인세 납부, 잉여금 누적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며, 해당 국가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체 기업 목록 및 수행기능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이 중 국가별보고서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을 과제로 정하여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에게 강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관련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4]**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은 다국적기업 그룹 구성원이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직접 제출함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최종 제출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바람직함
-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제출의무자와 관련하여 국가별 실정에 맞는 중요성 기준을 도입해야 함
- 이전가격문서화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벌금형이 적용됨

3)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10.7.22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2015.12.

- 다만 이전가격문서화 이행을 장려하는 다른 방법으로 면책규정 또는 입증책임 전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은 매년 재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함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사업 또는 기술적 비밀이나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함

국가별보고서와 관련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5)]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본사 소재지 과세당국에 제출하며, 정보교환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국가의 과세당국과 공유함
- 국가별보고서의 최종 제출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과 일치하도록 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특정한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음
- 다국적기업 그룹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총액이 7.5억유로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함
  - 다만 상기한 중요성 기준을 초과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구성원이 소재하는 모든 조세관할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국가별보고서는 2016년 사업연도부터 제출을 의무화함
  - 특정한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는바, 2016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또는 2018년도 중이 될 것임
- 이차적 매커니즘(secondary mechanism) : 국가별보고서 교환에 실패할 경우 현지기업으로부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받거나(local filing), 최종모회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전에 등록된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국가별보고서는 매년 재검토 및 업데이트되어야 함
- 각 국가는 국가별보고서에 담긴 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 과세당국은 국가별보고서상의 소득분배원칙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의 조정을 요구해서는 안 됨

5) ibid

■ 다음은 3단계 접근방법에 따른 Action 13의 주요 권고사항을 요약한 것임

표 1 Action 13 주요 권고사항 요약

구 분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내 현지법인이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직접 제출	다국적기업 그룹내 현지법인이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직접 제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가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
	면제	납세자의 부담과 각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요성 기준 도입 권고	납세자의 부담과 각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요성 기준 도입 권고	다국적기업 그룹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7.5억 유로 미만
보고대상		• 조직구조 • 다국적기업의 사업설명 •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 관계사간 금융거래 • 다국적기업의 재무 및 세무 현황	• 현지법인 기본 정보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정보 • 현지법인 재무 정보	• 조세관할 지역별 소득, 세금 등에 대한 분배에 대한 개관 • 조세관할 지역별 다국적기업그룹의 전체기업 목록 등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실무상 최적의 제출기한으로 봄	법인세 신고기한을 실무상 최적의 제출기한으로 봄	법인세 신고기한을 최적의 제출기한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 허용
처벌규정		민사상 벌금형 권고	민사상 벌금형 권고	민사상 벌금형 권고
이행시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6년 사업연도부터

03 국내 입법동향

1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 및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

■ **2015년 세법 개정 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와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에 관한 제출의무 규정을 도입함**

-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당해연도 재화, 용역 및 대차거래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다수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 가능하며, 대표 제출자가 보고서 미제출 시 제출의무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됨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6)]
  - 다만,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미도래 등 일정한 사유(「국조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할 경우 제출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 **처벌규정** :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언어** :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함
  - 다만, 통합기업보고서 영문 제출 시 1개월 내에 한글 번역본 제출이 요망됨
- **적용시기** : 개정세법 시행일(2015.12.15.)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6) 2015년 세법 개정 시에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제출기한으로 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함

■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범위는 제출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제출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예외를 인정함**[7]

- 예외 1 (사업군별 작성) : 다국적기업 그룹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출의무자가 포함되는 사업군 내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을 작성범위로 할 수 있음
- 예외 2 (자회사별 작성) : 다국적기업 그룹이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가 포함되는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을 작성범위로 할 수 있음

2 국가별보고서

■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반영함**[8]

- 제출의무자 :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다만,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의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이 제출의무를 부담함
- 제출기한 : 최종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30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간 다자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이하 "MCAA")에 서명하였으며, 2018년부터 다른 협정 체결국들과 국가별보고서를 상호 교환할 예정임**[9]

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007호,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관한 고시」, 2016.4.14.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세법개정안」, 2016.7.28.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 서명」, 2016.6.30.

3 우리나라의 이전가격문서화 규정(Action 13 관련 세법 개정 반영시)

■ 참고로 상기한 Action 13 권고사항 이행 차원의 국내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한 후의 우리나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우리나라의 이전가격문서화 규정(Action 13 관련 세법 개정 반영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의무 면제	미제출시 과태료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법인세 신고기한	O[1]	X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X	X
거래가격조정 신고서			X	X
국제거래명세서			X	O[2]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X	X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O[3]	X
이전가격 산정방법 입증 자료 (국조법 제11조 제3항)		해당없음 (과세당국 요구시 제출)	X	O[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O	O
	개별기업보고서		O	O
	국가별보고서		O	X

주: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됨
2)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3)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면제됨
4)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자료의 종류에 따라 3천만~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04 해외 입법동향

1 북미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15년 12월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으며[10], 2016년 6월 국가별보고서 최종 규정을 발표함[11]

-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제출의무자 : 미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8.5억달러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제출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내
  - 적용시기 : 최종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유효함
-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도입에 대한 입법 논의는 확인되는 바가 없지만, 특정 기업이 마스터파일을 작성 또는 준비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마스터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12]

■ 캐나다 재무부는 2016년 예산안에 아래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도입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2016년 7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입법안을 발표함[13]

-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별보고서와 관련하여 확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출의무자 : 캐나다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10) 미국 재무부, https://www.gpo.gov/fdsys/pkg/FR-2015-12-23/pdf/2015-32145.pdf.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7호 재인용

12) Deloitte,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l-tax-beps-actions-implementation-united-states.pdf.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13)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Canada-introduces-country-by-country-reporting-legislation.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2 유럽

독일 재무부는 2016년 6월 이전가격 분야 관련 OEC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발표하였고[14], 2016년 7월 이를 승인함[15]

- 기본적으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및 국가별보고서로 구성된 OECD의 3단계 접근방법을 수용하며, 향후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도입 등 현재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 직전연도 그룹 총매출액이 1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내 내국기업은 과세당국에 마스터파일을 제출해야 함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음
  - **제출의무자** : 독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2월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가 포함된 개정세법을 발표하였으며,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 관련 입법동향은 아직 확인되는 바가 없음[16]

- 개정세법에 포함된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제출의무자** : 프랑스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제출기한** : 최종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영국 국세청은 2015년 재정법(Finance Act 2015)에서 국가별보고서를 도입하고[17], 2016년 2월 적용 통화기준, 신고대상 등을 수정하여 아래의 최종 국가별보고서 규정을 발표함[18]

- 최종 확정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은 다음과 같음

---

14)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07/tnf-germany-country-by-country-reporting-beps-items-in-draft-bill.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7호 재인용

16)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01/tnf-france-country-by-country-reporting-transfer-pricing-declaration.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17)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untry-by-country-reporting-updated/country-by-country-reporting-updated), 영국 법률사이트(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6/237/made).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3호 재인용

- **제출의무자** : 영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제출기한** : 최종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탈리아 의회는 2015년 12월 예산법 승인을 통해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을 도입함[19]

-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제출의무자** : 이탈리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예산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세칙을 발표하여 적용시기, 보고대상, 보고방법 등 국가별보고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정할 계획이었으나[20],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는 없음

러시아 재무부는 2016년 4월 국가별보고 규정 도입에 관한 입법안을 발표함[21]

- 아래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함
  - **제출의무자** : 러시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500억루블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제출기한** : 최종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동 입법안에 마스터파일 준비 및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19)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5/12/tnf-italy-country-by-country-reporting-approved-in-2016-budget-law.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20) pwc, https://www.pwc.com/gx/en/tax/newsletters/pricing-knowledge-network/assets/pwc-italy-cbcr-legislation.pdf.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21) KPMG,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Russia_issues_draft_law_on_country_by_country_reporting_requirements_for_public_consultation/$FILE/2016G_00612-161Gbl_TP_Russia%20issues%20draft%20law%20on%20CbC%20reporting%20requirements%20for%20public%20consultation.pdf.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3 아시아/오세아니아

호주 국세청은 2015년 12월 국가별보고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고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 보고서 모두에 대한 입법을 완료함[22)]

- 동 지침을 통해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 **제출의무자** : 호주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연결매출액이 10억호주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또는 그룹 내의 특정 기업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로컬파일의 경우 소규모 또는 저위험 기업군에 적용하는 Short-form Local file과 일반적인 Local file, 두 가지 서식으로 입법할 예정임[23)]

일본 재무성은 2015년 12월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및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24)], 2016년 4월 일부 규정을 개정함[25)]

- 마스터파일과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 **제출의무자** : 일본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1,000억엔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제출기한** : 최종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시기** :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로컬파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제출의무자**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없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총 거래규모가 50억엔 미만이며, 직전(없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무형자산 거래 규모가 3억엔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함
  - **제출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준비하고 과세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적용시기** : 201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22) 호주 국세청, Subdivision 815-E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ountry-by-Country reporting, 2015.12.17.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23)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05/tnf-australia-country-by-country-final-local-files-released.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24) 일본 재무성, 「平成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15.12.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25)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04/tnf-japan-country-by-country-reporting-requirements.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5년 9월 동기자료와 국가별보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특별과세 조정방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26], 2016년 7월 확정안을 발표함[27]**

- 동기자료에는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특수항목보고가 포함되며, 상세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제출의무자** : 마스터파일은 특수관계거래규모가 10억위안 이상인 기업, 로컬파일은 특수관계거래규모가 거래유형별 기준금액(무형자산거래 2억위안, 금융자산거래 및 무형자산 관련 권리 이전거래 1억위안, 기타거래 4천만위안) 이상인 기업
  - **제출기한** : 마스터파일은 최종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로컬파일은 보고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6월 30일까지 준비해야 함(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모두 과세당국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제출의무자** : 중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55억위안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제출기한** : 법인세 신고 시 보고대상 서식의 일부가 되었으며, 보고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인도 정부는 2016년 2월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도입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함[28]**

- 마스터파일에 대한 상세 규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임
  - 다만, 중요성 기준을 정하여 마스터파일 제출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을 계획임
- 로컬파일 관련 규정은 현행 세법을 유지하거나 OECD의 권고사항과 연계하여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
- 국가별보고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제출의무자** : 인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
  - **제출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내
  - **적용시기** : 2016년 사업연도부터

---

26) 중국 국가세무총국,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征求意见, 2015.10. China (People's Rep.) – Draft implementation rules on special tax adjustments-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23 Sep. 2015), News IBFD.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27) KPMG,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pdf/2016/07/tnf-china-july-13-2016.pdf.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28)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6/03/tnf-india-country-by-country-reporting-transfer-pricing-documentation-rules-in-budget-2016.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에서 재인용.

4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MCAA 체결 현황

■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OECD 및 G20 회원국 총 42개국 중 7개국을 제외한 35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MCAA에 서명함[29)]**

- OECD 및 G20 회원국 중 2016년 6월 30일 기준 MCAA 미서명 7개국은 미국, 러시아, 터키, 헝가리,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임

5 요약

표 3 주요국의 Action 13 권고사항 입법동향

국 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 교환 MCAA[1)]
북미	미국	–	완료	미서명
	캐나다	–	논의중	서명
유럽	독일	논의중	완료	서명
	프랑스	–	완료	서명
	영국	–	완료	서명
	이탈리아	–	완료	서명
	러시아	–	논의중	미서명
아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완료	완료	서명
	일본	완료	완료	서명
	중국	완료	완료	서명
	인도	논의중	논의중	서명

주: 1) 2016년 6월 30일 기준 현황임

29) OECD, Signatori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05 요약 및 시사점

■ **Action 13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으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특히 국가별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과제로서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에게 강한 이행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달리 제출면제대상과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우리나라는 2015년 세법 개정 시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과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도입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Action 13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함**

- 2016년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고, 국가별보고서 제출면제 기준금액을 OECD의 권고를 수용하여 매출액 1조원으로 정함

■ **해외 주요국의 Action 13 권고사항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대부분 도입을 완료한 상황인 반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경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이 확인됨**

- OECD 비회원국 중 중국, 인도 등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Action 13 권고사항을 자국 세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간 다자 협정(MCAA)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음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Action 13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해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강화된 이전가격문서화 의무 준수를 위해 준비 및 대응을 해나가야 함**

-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인 국내기업은 2016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해외의 자회사들이 현지 과세당국에 마스터파일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또한 해외진출 국가의 Action 13 관련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함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국내기업으로서 외국기업을 최종모회사로 둔 기업의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 국가의 MCAA 체결 현황, 최종모회사의 마스터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준비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보교환 실패로 인해 현지법인에 의한 국가별보고서 제출(local filing)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함

Action 13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BEPS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용하거나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그룹 전체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이행, 그룹내 다른 기업과의 협업, Action 13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파악 등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업무의 범위가 종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참 • 고 • 문 • 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Ⅰ)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이행 과제」, 2015.11.19.

_____,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 서명」, 2016.6.30.

_____, 「2016년 세법개정안」, 2016.7.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2016.

_____,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2015.12.

_____,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3호, 2016.04.

_____,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7호, 2016.08.

일본 재무성, 「平成28 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15.12

중국 국가세무총국,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 征求意见, 2015.10.

OEC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Action 13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_____, "Signatories of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 2016.6.30.

호주 국세청, "Subdivision 815-E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ountry-by-Country reporting", 2015.12.17.

기획재정부, www.oecd.org

미국 재무부, www.treasury.gov

영국 국세청, www.gov.uk

OECD, www.oecd.org

KPMG, www.kpmg.com

EY, www.ey.com

Deiloitte, www.deloitte.com

pwc, www.pwc.com

IBFD, www.ibfd.org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